

평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58
------	-----

제출년월일 : 2000. 7. .

제 출 자 : 평 창 군 수

1. 제안이유

-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도시지역의 아파트, 공동 주택의 신규 건축 등으로 행정 리의 설치 및 통·폐합이 요구되고 있어 행정구역의 합리적인 조정을 통하여 행정능률향상 및 주민편의를 증진코자 함

2. 주요골자

- 행정 리 조정

- 총 계 : 185개 리 ⇒ 187개 리

- 백옥포 3리 신설 운영(기존 백옥포 1리에서 분할)
- 황계13리 신설 운영(기존 황계5리에서 분할)

3. 참고사항

0 관계법령 : 별 첨

0 예산조치 : 필요없음

0 관계부처승인 : 해당없음

0 입법예고 : 군보게재 (2000. 5. 19 ~ 6. 7)

0 신· 구조문 대비표 : 별 첨

평창군이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평창군이장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표중 이장정수란 합계 "185"를 "187"로, 용평면 백옥포리 "2"를 "3"으로, 도암면 횡계리 "12"를 "13"으로 하고, 동표 읍면명란중 용평면 "14"를 "15"로, 도암면 "21"을 "22"로 하고, 동표 분리구명란중 "백옥포2리" 다음에 "백옥포3리"를 추가, "횡계12리" 다음에 "횡계13리"를 추가하며, 동표 구역란중 "종전 백옥포리 일부" 다음에 "종전 백옥포1리 일부"를 추가, "종전 횡계4리 일부" 다음에 "종전 횡계5리 일부"를 추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이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은 다음과 같다.					제2조(-----) -----				
읍면명	리 명	이장정수	분리구명	구 역	읍면명	리 명	이장정수	분리구명	구 역
합 계		<u>185</u>			합 계		<u>187</u>		
용평면 (11)	백옥포리	2	백옥포1리 백옥포2리	중전 백옥포리 일부 중전 백옥포리 일부	용평면 (15)	백옥포리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백옥포3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중전 백옥포1리 일부
도암면 (21)	횡계리	<u>12</u>	횡계1리 횡계2리 횡계3리 횡계4리 횡계5리 횡계6리 횡계7리 횡계8리 횡계9리 횡계10리 횡계11리 횡계12리	중전 횡계1리 일부 중전 횡계2리 일부 중전 횡계3리 일부 중전 횡계4리 일부 중전 횡계5리 일부 중전 횡계1리 일부 중전 횡계6리 일부 중전 횡계6리 일부 중전 횡계1리 일부 중전 횡계1리 일부 중전 횡계4리 일부 중전 횡계4리 일부	도암면 (22)	횡계리	<u>13</u>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횡계13리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중전 횡계5리 일부

관계법령 발췌서

□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 제4항 : 리의 구역은 자연의 촌락을 기준으로 하되,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에 의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폐치·분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제5항 : 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 제6항 : 제5항의 행정동·리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